



I. 개 요

1. 지방세정의 유비쿼터스화

지난 2003년 4월부터 “지방세 정보화 실무획단”에서는 약 9개월간의 연구성과를 2004년 2월에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정의 향후 발전목표를 “U-지방세정의 구현”으로 정하고, 지방세정의 전산화 → 정보화 → 지식화 → 유비쿼터스화를 통하여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음 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지방세정에 참여하는 지방세정의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 Cyber지방세청

최근 인터넷의 확산 및 주민 참여욕구의 확대에 점차 서비스 개념에 부합하는 지방

세정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지방세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중복개발에 따른 비효율성, 과세권자 위주의 정보제공, 관심도 차이에 따른 전산화 수준의 격차 등 적지않은 문제점 및 부작용들이 지적되고 있는 바, 금번 “지방세 정보화 실무획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지방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국단위 포털사이트인 Cyber지방세청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 Cyber지방세청의 구축방향 및 개선점

현재 추진중인 Cyber지방세청의 업무내용은 납세자를 위주로 한 서비스 개념의 지방세정 정보제공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하여 과세내역을 조회하고

전자납부의 실현 및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납세서비스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행해지고 있는 세정업무를 Cyber지방세청을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실무자들을 위한 토론방 개설, 향후 전자고지·전자납부제도의 확대실시에 대비한 납세자 전자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활용방안, 그리고 전자정부의 구현 및 효율적 체납관리를 위한 국세청 및 법원 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지방세실무자들을 위한 토론방 개설

1. 서

근래 우리사회는 종전과는 달리 상당부분 토론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토론이란 여러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논의를 통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으로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특히 새로이 제기되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그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 실무자의 자발적 참여 부족

현재 지방세의 부과·징수·구제 등 세정 전반에 걸쳐 각 자치단체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여러면에서 상호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는 동일법을 적용하고 세정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인데 현재 개선안의 마련 및 정보교환의 일환으로 연찬회나 교육 등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연찬회나 교육은 발표자료의 준비 및 담당업무의 공백에 따른 심적부담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실무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작지만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업무 실무자간 공론화가 미흡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 부분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야기되기도 한다.

나. 조세행정의 통일성 결여

큰 틀에서 볼 때 현재 진행중인 전산코드·과세대장·각종서식의 표준화와 같은 지방세정보화 관련 일련의 계획들은 지방분권화 이후 그동안 야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세정의 내부적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외부 전산망과의 원활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행정기관 내부 및 자치단체 상호간에 정보교환이 원활치 못하여 여러 면에서 지방세정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기 때문인데, 그 예로 동일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인접한 자치단체와 서로 다르거나 특히 최근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단

위의 통일적인 해결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 기존 Q&A방식의 한계

현재 행정자치부나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질의·회신'이나 'Q&A'는 주로 상·하급기관간 또는 부과청과 납세자간 대화방식으로 상급기관 및 부과청은 답변내용의 현실적인 구속력으로 인하여 정식민원의 처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처리하고 있다. 즉 질의자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듣고 그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오히려 웹상 공개되는 특성 때문에 더욱 소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라. 실무자간 연계체계 부족

현재 자치단체에서 세정관련 교육이 있을 때 그 대상자는 주로 해당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다. 하지만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사무분장 형태의 상이라는 현실을 비취볼 때 과연 이러한 담당업무별 교육이 얼마나 효율적일런지는 다소 의문이 생긴다. 또한 지방세정 담당자 즉 세무직 공무원은 한정된 부서에서 인사이동 및 업무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반드시 현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에서 최고라고만은 볼 수 없으며 또한 교육이나 연찬회에 있어 현 담당자가 자신의 부서에서 대표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2. 실무담당자를 위한 토론방 개설

가. 운영형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각 자치단체의 실무자들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가능한 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해낸다. 세정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고 현재의 담당업무에 구애받음 없이 해당 문제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등 토론의 유연성을 보장한다.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공론화를 통해 일정한 토론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투표방식을 적용하여 최종안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나. 참여대상

원칙적으로 토론이나 Q&A의 주체는 지방세정인으로 국한하되, 자치단체의 실무자를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일반인이나 납세자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는 확정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다양한 논의들이 외부로 공개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행정혼선을 방지하고, 실행 전의 체납처분 등이 미리 알려져 그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시 소속기관을 기재하고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 내용 및 운영방식

기본적으로는 지방세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되 성격상 공개되어서는 안될 부분은 별도의 메신저나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하여

좀더 심도있는 부분을 다룰수도 있을 것이다. 토론 중 실명이나 소속이 명시되다보면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반대의견을 외면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보다 개방된 자세에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로 접속하여 어느 정도 익명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통하여 전국에 파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방의 활용

현재 지방세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의 의견들을 서면으로 취합하거나 약 50여명으로 자치단체 공무원을 위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자치단체 실무자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으로 대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온라인방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현행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내용의 해결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3. 기대효과

가. 지방세정의 상향평준화

각 자치단체의 성공사례는 물론 실패사례들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다면 성공사례 못지 않게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절차를 통해 검증되는

방안들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별도지시 없이도 각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과정의 시너지효과는 지방세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지방세정이 상향평준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나. 부과처분의 적법성 확보 및 승소율 제고

민원이 있거나 소송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부담없이 토론방에 상정하여 전국의 관련사례를 수집하고 타지역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 및 적법성 주장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향후 이의신청 및 소송 과정에서 이를 활용한다면 승소율을 높일 수 있고 설령 패소한다 할지라도 상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치단체 상호간 업무 연계성 및 통일성 확보

토론방이 활성화되면 개별사안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여건에 있는 자치단체간에 연대가 활성화되어 차후에라도 그러한 개별사안에 대하여 공동 추진 및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 제도개선예의 상시적 참여 가능

납세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선실무자들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가장 빨리 그리고 민감하게 느끼는 반면 이의 해결을 위한 연찬

회나 교육에의 참여는 오히려 기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항상 개방되어 있는 토론방을 통하여 일선실무자들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가장 합리적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전자정보의 통합적 이용 및 활용 방안

1. 서 (현실태)

가. 전자정부 구현

정부에서는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 즉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행정서비스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와 대민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핵심으로 지식경제 강국의 초일류 선진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

하였을 때 그 발송지를 전송해 주고 납기한 도래시 납기내납부를 홍보한다거나 체납자에게 체납내역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등 일종의 납세안내 서비스는 전자정보의 광범위한 확보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전자정보는 장소에 상관없이 수신할 수 있으며, 특히 휴대폰 및 전화번호의 평생번호로의 전환은 전자정보의 불변성을 뒷받침하여 그 유용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전자정보의 개별적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비효율성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은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납세자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납세자의 전자정보를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수집(신청)하고 활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이다. 전자정보의 수집면에서 보면 납세자가 각 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됨에 따라 신청절차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전자정보의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각 자치단체간 전자정보의 통일성

성을 상당부분 반감시키게 될 것이다.

어 시행중에 있다.

의 효율성 및 불변성

2. 개선방안

가. 전자정보 관리를 위한 통합서버의 구축

Cyber지방세청의 서버에 납세자의 주민

나. 전자정보의

각종 납세정보의 지방세청은 이메일(세지)와 같은 전자정보적으로 수행될 수

등록번호, 성명,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DB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그 정보를 추출한 후 주민전산망의 주소와 연계하여 활용한다.

나. 전자정보의 통합적 수집 및 활용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게 신청을 안내·접수하고 이를 전국의 자치단체가 공유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할 때는 납세자에게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뜻을 알림과 동시에 이후 전자정보의 변경시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아무 자치단체에서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매년 정기분 세목의 부과시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종 부과정보 전송서비스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Cyber지방세청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 납부고지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작성한 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납세자가 웹서버에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으로 납세자에게 주기적으로 발송되는 납부고지서를 이용해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고지서의 구정보관용 부분에 따로 신청란을 두고 여기에 납세자가 전자정보를 기입하면 해당 수납부서에서 이를 취합·전산입력 후 중앙서버로 업로드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에

대량의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전자정보 수집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라. 전자고지제 시행에 따른 법적근거 신설

지방세정에서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것처럼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서 송달방식 외에 납세자가 원할 경우 등록된 e-mail주소로 전자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 전자고지제도 관련 법령

- 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 ② 전자정부법 제17조~제19조
- ③ 국세기본법 제10조

3. 기대효과

가. 전자정보 이용의 효율성 제고

우리나라 인터넷 및 휴대폰 보급율로 볼 때 향후 전자정보를 활용한 납세정보의 제공서비스는 확대될 전망이며,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개별적 추진에 따른 신청절차의 중복 및 홍보상의 한계로 인해 기본적인 전자정보의 수집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정보를 수집·활용한다면 지방세정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나. 고지서를 활용한 신청절차의

간소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절차가 복잡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듯이 전자정보를 인터넷이나 방문·우편 접수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은 신청대상·절차·비용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납부고지서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신청가능하며 절차나 비용면에서 상기 방법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초기단계에서 대량의 정보를 비교적 쉽게 수집할 수 있으므로 여타방식에 우선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 등기발송제도의 보완

고지서 송달을 과세의 통지측면과 납부용지의 교부측면으로 나눠 생각해 볼 때 최근 금융기관의 창구인원 축소 및 공과금 수납 기피현상과 전자정부의 전자고지제의 시행 등의 경향은 은행수납용 납부용지의 교부라는 고지서의 역할을 더욱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등 주간에 우편물을 받을 수취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등기송달을 하게되면 실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반송되어 우편발송비용의 가중 및 가산금처리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는 등기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액이하의 일반우편송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도달의 효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남게 된다. 만약 일반우편송달시 전자정보를 통한 고지서 발송현황을 납세자에 전송해 준다면 송달률 및 납부률은 좋아질 것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고지서 송달체계를 현재의 등기송달 원칙에서 일반우편송달 원칙으로의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IV. 법원경매 관련 네트워크 구축

1. 서 (문제점)

가. 법원경매 관련 업무흐름도

제3자의
체납 → 압류 → 경매신청 → 경매개시결정 → (최고서 통지) → (교부청구) → (낙찰기일통지) → 경매낙찰 → (배당기일통지) → 배당

나. 경매관련 공문서의 과다

법원이 발송하는 경매관련 문서에는 최고서, 입찰및낙찰기일통지서, 배당기일통지서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최고서를 받고 정한 기간 내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매관련 문서는 물건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에 비해 분량이 많은 편이며, 등기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적지 않은 우편발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법원담당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통지가 누락되거나 자치단체내부의 문서유통 과정에서 실제 담당자에게 전달이 늦어져 기일

을 넘기는 등 교부청구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다. 미압류물건에 대한 교부청구의 한계

교부청구는 경매물건에 대한 채권있는 자가 경매개시결정 후 최고서를 통지 받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법원(경매계)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압류권자만 가능하지만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타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경우 교부청구는 물론 배당법원으로부터 배당도 가능하다. 반면 경매법원 입장에서는 압류권자(자치단체)와 물건소재지 자치단체만 경매문서를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타지역의 압류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는 설령 그 물건이 경매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 교부청구는 물론 채납관리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다.

※ 대법원홈페이지(www.scourtauction.go.kr)에서 지역별로 경매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나 경매물건 또는 그 소유자의 성명만으로만 조회가 가능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물건이 당해 자치단체에 속한 물건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라. 부동산압류의 한계

자치단체마다 다르겠으나 일선에서는 부동산가액에 비해 채납액이 과소하거나 독촉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 부동산 압류를 자제하는 편인데, 이는 납세

자가 대출시 금융기관에 담보물로 제공되는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신용도와 관련하여 심한 반발을 사기 때문이다. 또한 채납자로서 수건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압류실익을 따져 이미 선별 압류하였거나 기타 다른 채권이 확보된 상태여서 과다압류 논란이 있어 추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하지 않는 편이다. 이 경우 채납자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시 채납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 개선방안

가. Cyber지방세청내 전국의 채납자 DB 구축

나. 대법원 경매전산망과의 연계

대법원으로부터 전국의 경매자료(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 등)를 소유자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Cyber지방세청의 중앙서버로 전송받은 후, Cyber지방세청에서는 이를 다시 전국의 채납자DB와 연계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전송한다.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거나 동명의 채납자가 있는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당해물건인지의 여부를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한다.

다. 경매신청 단계에서부터 자료 전송

경매법원이 처음으로 외부통지하는 경매문서는 최고서로서, 이는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고나서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이를 압류권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경매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신고(교부청구)만 가능하고 압류실익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액 또는 타채권 선압류의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을 자치단체가 알 수 있다면 후순위 배당은 물론 결손 등 체납관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기대효과

가. 종이문서 축소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

먼저 전자문서유통에 관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종이문서를 축소하게 되면 실수로 인한 문서누락이나 과도한 우편발송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효율적인 체납관리

상기 살펴본 부동산 압류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차량·건설기계와 같이 타지역에서 경매가 이뤄지는 경우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교부청구는 물론 체납세 징수 및 결손처분에 도움이 될 것이다.

V. 국세 자료와의 네트워크 구축

1. 서 (문제점)

가. 국세청의 과세자료 협조 미흡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는 지방세 관

련자료에는 주민세 부과를 위한 소득세 과세자료(월1회)와 기타 개별적인 협조요청에 의한 통지가 있다. 그러나 개별 건에 대한 별도의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자체 업무량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회신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나. 소득세 환부자료 통보 지연에 따른 지방세 환부 지연

〈표 1〉은 2003년도 광주광역시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현황이다. 이 중 주민세 즉, 국세청의 통보에 의해 환부가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 과오납금 중 약 35.9%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국세(소득세)가 경정결정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가 납세자에게 환부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방세(주민세)도 환부처리 되어야 하며, 납세자는 같은 시기에 환부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세의 환부결정으로 납세자에게 과오납금이 지급될 경우 그 내용이 1~2개월 후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되기 때문에 지방세 환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세 환부금 조회 미흡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 국세 신고분에 대한 환급결정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주기적으로 다량 발생하고 있다. 이중 국세 체납분은 우선 충당 후 환부되나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류절차가 있어야 한다.

〈표 1〉 2003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 (광주광역시)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국세조정		제도적 발생		이중납부 등	
	건수	금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4,731	4,197	1,339	1,506 (35.9%)	4,504	445	8,888	2,246
취·등록세	1,163	1,463			151	185	1,012	1,278
주 민 세	2,542	1,787	1,339	1,506			1,203	281
자동차세등	11,026	947			4,353	260	6,673	687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국세환급금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내역의 조회절차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그 지역 세무서에 개별적 조회 후 압류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자료부족으로 인한 체납액 정리의 실질적 효과 미흡, 개별적 조회로 인한 업무량 과다 및 통보지연으로 인한 적기압류 실패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전국의 체납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조회할 경우 국세과오납금이 수시 발생되고 즉시 환부되는 특성상 압류시기를 일실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될 것이다.

2. 개선방안

- Cyber지방세청에 전국 국세과오납DB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방세과오납금의 신속한 환부 및 압류조치 국세청과 연계하여 사이버지방세청에 전국 국세과오납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전국 지방세 체납자료와 연동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전송한다. 전송받은 국세과오납자료에 의해 지방세를 신속하게 경정·환부조치하고 체납자의 환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압류 및 추심절차를 밟아 체납액에 충당한다.

〈표 2〉 국세환급금 현황(전국)

(단위 : 억원)

연도	징 수 결정액	환급금 발생					환급금 처리			발생 비율
		계	부가세	법인세	종소세	기타	환부	충당	기타	
2002	1,315,128	229,857	145,066	75,400	2,731	6,660	223,756	6,063	38	17.5%
2001	1,245,700	233,877	141,377	78,569	1,944	11,987	227,876	5,963	38	18.8%
2000	1,204,990	226,217	135,912	81,141	2,007	7,157	217,829	8,350	38	18.8%

- ☞ 국세환급결정일 > 부가가치세 : 연4회(2월, 5월, 8월, 11월) - 월별 25일한
- > 법인세, 종합소득세 : 연1회 - 5월(12월 결산법인), 6월

3. 기대효과

- 신속한 환부조치를 통한 세정신뢰 확보 및 효율적 체납관리

국세와 거의 동일 시기에 지방세의 환부가 이뤄짐으로 인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국세 환부결정 전에 압류함으로써 채권확보에 효과적이다.

VI. 결 론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라 지방세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통합적 성격의 업무들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어 왔으며, 그 결과 지방세정의 통일적 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 통일성 없는 전산코드와 데이터 및 서식 등의 불일치는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지 못하고 결국 외부자료를 통일적·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전자정부이념에 따라 꾸준히 발전해가고 있는 국세분야 등 제반행정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 한 지방세정인으로서 지방세정 발전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정의 발전을 꾀하는 차원에서 앞서 살펴 본 과제들을 고찰하였다. 실무자 위주의 토론문화 활성화는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지방세정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세정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며, 전자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은 현재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전자고지·전자납부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의 구축이라는 의미에서 향후 찾아가는 지방세정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법원 및 국세청간 네트워크 구축은 거시적으로 전자정부의 실현을 통해 관공서간 불필요한 공문서를 줄임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세자료의 제출·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풍토의 조성'을 위해 1999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을 우리 지방세법에 포함시켜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과징자료를 구축하는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